

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46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의일·발의자: 2025. 9. 30.(화) 서영배(옥곡) 의원

나. 회부일: 2025. 9. 30.(화)

다. 상정일: 2025. 10. 16.(목)

-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원안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기존의 근거법령인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폐지되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, 아열대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광양시 아열대 작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근거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(안 제2조제1호)
- 소비촉진에 관한 조문 신설 (안 제8조)

3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광양시 특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농가 판로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적합성, 입법 형식, 문구 표현 등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7명)

6. 기타 사항

- 해당 없음.

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기후변화”란 「~~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~~」 제2조제12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.
2. “아열대농업”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 등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,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-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광양시 소재 관련법인·단체 등은 광양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·협조해야 한다.

제4조(육성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
3. 기술의 개발·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
4. 상품의 생산 및 유통
5. 농업인 등의 육성 방안
6.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
2. 생산 및 판로 현황
3. 가공 및 유통 현황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육성사업 지원)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조사 및 연구
2. 기술 개발 및 보급
3. 상품의 생산·가공·유통 등 기반 구축
4. 전문인력 양성

5.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

6. 그 밖에 시장이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교육 및 컨설팅)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, 관련 법인
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
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
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소비촉진) 시장은 아열대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
에 광양시에서 생산한 아열대 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
있다.

제8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